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1) 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함

2)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 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신설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규정
- 라.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 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 반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1. ~ 10. 12.)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의 수집(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②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제출요청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할 것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물적 시설을 보유할 것
4.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부서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권역별(특별시는 제외한다)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산업진흥기관들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연구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또는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사업
4.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역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지역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사

업

7. 지역 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

8. 지역 소프트웨어사업 진흥 또는 지역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9. 기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제2항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때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5(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진흥시설 등의 지정취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3.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

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호환성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6. 기타 소프트웨어 융합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 및 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받은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회에 한하여 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은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중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보급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업체·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국세청의 휴업·폐업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제출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 중 개인 연구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① 법 제29조제3호에서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법·제도 조사연구
2.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보안약점 진단 등 기술지원
4.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적용을 위한 가이드 제정·보급
5.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정보 축적 및 활용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법·제도 조사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측정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의 측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의 내용·일시·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결과는 무효로 하며, 해당 응시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응시하거나 역량평가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⑦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제1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물가, 인건비 변동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계

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지체상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활용, 보호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제31조(불이익행위등의 신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행위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날(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가. 민간부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민간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경미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부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의 공공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

2.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가. 제1호 가목의 사업 :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호 나목의 사업 :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방식 및 비용·수익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②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먼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을 법 제40조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제32조의 요건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이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의 계획 중에서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 이외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

2.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제외사유)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요청
하는 경우
3.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
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소프트웨
어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할 때 법 제50조에 의해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는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대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41조(자료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까지를 말한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

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5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에 관한 안건

2. 법 제50조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등의 조정(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범위에서 과업의 재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건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안건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수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이를 위

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안전심의 관련 과업변경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통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때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절차 등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46조(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37조 및 제38조2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제47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49조(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려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에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이미 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소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계약금액
2.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명 및 계약금액, 수량, 계약방법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신청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국세청의 휴업·폐업 및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제출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반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5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56조(정관기재사항)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효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변경을 받아

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에 관한 업무
 8.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법 위반 및 불이익행위등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4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관한 업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발주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11.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분석과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업무
 12.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대가 산정 지원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업무
 13.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확인, 결과 공개 및 개선권고의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및 피신고자에의 통지에 관한 업무
4. 제3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이 법 위반과 불이익행위등에 관한 신고의 조사에 대한 지원 업무
5. 제3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애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기술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과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해당 출연금의 관

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2016년 1월 1일
4. 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2017년 1월 1일
5.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아래 열거된 기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2)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3) 경기테크노파크

- 4) 경남테크노파크
- 5)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7)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8)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10) 세종테크노파크
- 11) 안양창조산업진흥원
- 12)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 13)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14) 인천테크노파크
- 1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7) 제주테크노파크
- 18) 충남테크노파크
- 19)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20) 포항테크노파크

제3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개정규정 중 제6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조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④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78조의3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5호”는 “제10호”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5조”는 “제11조”로, “제6조”는 “제12조”로 한다.

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7조”는 “제61조”로 한다.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⑯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

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제3항 관련)

1.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 가.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만일 임차일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강의·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및 예산

가.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나.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요건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일 것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조직 및 인력	가.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필수인력을 보유할 것
3. 장비 및 시설	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및 성능측정도구 등 평가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나.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평가시험 공간 및 시설을 보유 할 것
4. 기술역량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 구사항에 적합한 기술역량을 보유할 것
5. 시험방법	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시험절차 등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324